

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93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국내외 창업인재 유치는 협업과 융합을 통한 창업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요소로, 세계는 인재유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·시행 하여 개방적 협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중임
- 나. 서울의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창업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이 중요하며, 특히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창업공간 제공은 창업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
- 다. 서울은 고물가·고비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창업인재를 위한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임대주택 방식과는 다른 산업용도의 새로운 주거형태가 필요하며,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관련법령
 -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(청년주거사업)
 -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0조(외국인투자환경 조성 지원)
 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(지원의범위)제1항3호
 -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(사업)

나. 주요사업

- 역세권 일대 적합한 공간의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해 「산업레지던스」 조성
 - 종각, 신림, 신촌 등 창업보육기관·대학 인근 건물 5개소 매입
- 국내·외 우수 창업가 선정 후 거주공간 저렴 임대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데 전문성이 있으며, 도전숙 사업 등을 통한 창업인재를 위한 공간 조성에도 노하우가 풍부함
- 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창업가를 위한 「산업 레지던스」 조성·운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금으로 소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

- 2020년도 예산편성 : 23,261백만원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투자창업과 투자환경개선팀 나일청(☎2133 - 4766)

연번	매물명	건축연면적 (대지/층수)	1인실수 (추산)	소요예산 (백만원)	매매가 (백만원)	조성비 (백만원)	운영비 (백만원)
	5개소		123	23,261	17,200	5,061	1,000
1	서대문구 창천동 13-69	472㎡ (155㎡, B1/5)	22	4,386	3,300	886	200
2	서대문구 창천동 29-14	780㎡ (202㎡, B1/9)	36	5,663	4,000	1,463	200
3	마포구 노고산동 106-54	575㎡ (208㎡, B1/5)	26	5,278	4,000	1,078	200
4	관악구 신림동 1432-28	428㎡ (160㎡, B2/4)	19	4,103	3,100	803	200
5	관악구 신림동 1432-98	443㎡ (160㎡, B1/4)	20	3,831	2,800	831	200

※ 부동산 시장에 나온 실제 매물을 조사하였음